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1. 3. 8. ~ 3. 17.) 중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관련)

공급자
1. 라이우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나. Eldon Development Limited 다.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르자오스틸(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나.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안타이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Jiexiu Yian Industry Co., Ltd. 나.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다. Everstate Trading(Hong Kong) Limited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72
2.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그 밖의 공급자	28.23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